

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5. .

제 출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군정발전과 지역봉사에 헌신하는 평창군새마을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유지관리 대상을 종전 새마을 사무소에서 새마을 시설·장비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(제3조제1항제1호)
- 나. 새마을회원의 건강검진비용 지원 내용을 추가함(제3조제1항제8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4. 03. 21. ~ 04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평창군 공고 제2024-437호, 행정과-9162(2024.04.11.)호
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실-4638(2024.03.25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실-4638(2024.03.25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2382(2024.04.04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실-6109(2024.04.17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실-6890(2024.04.30)호]

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사무소”를 “시설·장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용 지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새마을 운동조직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새마을운동조직 <u>사무소</u> 유지 및 관리</p> <p>2. ~ 7. (생략)</p> <p>8. <u>상해보험 가입</u></p> <p>9. · 10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시설·장비</u> ----- -----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</u></p> <p>9. ·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,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,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, 새마을문고중앙회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개인·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(財源)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의 사용·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이 영 배
연락처	(033) 330 - 2210